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39호의3서식] <신설 2017. 11. 23.>

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

성 명		생년월일		성 별	남·여
주 소					
자격종별		자격증 번호	제 호		

귀하는 년도 차 보수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수증을 수여합니다.

년 월 일

보수교육실시기관장 직인

190㎜×134㎜[백상지(150g/㎡)]